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2020. 9.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8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11

II.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1. 사건처리 흐름도	32
2. 절차 단계별 설명	34
3.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37
4. 대상 유형별 대응 절차	40
가.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41
나.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58
다.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68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85



Ⅲ.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조치 방안

1.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96
2.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 대응 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98

Ⅳ. 참고자료

1.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106
2.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108
3. 사안처리 관련 서식	111
4. 관련 법률	146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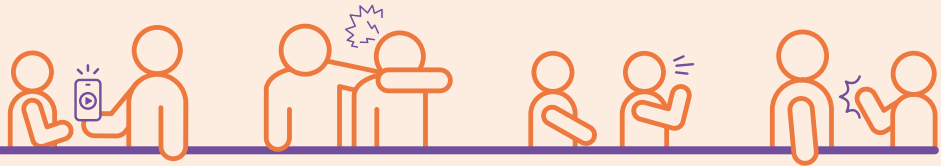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 체계	9
<표 1-2> 성희롱 유형별 예시	15
<표 1-3>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금지 조항	16
<표 1-4> 가해 행위별 유형	20
<표 1-5>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조항	23

II.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표 2-1> 피·가해자 대상 관계별 주관위원회	38
<표 2-2> 관련 위원회의 역할	39
<표 2-3> 대상별 조사 주체 및 조사 내용	47
<표 2-4>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수행 내용	54
<표 2-5> 성고충상담원 역할 및 구성요건	60



<표 2-6> 상담 단계에 따른 상담기관의 주요 업무	60
<표 2-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수행 내용	78
<표 2-8>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81

Ⅲ.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조치 방안

<표 3-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100
---	-----

Ⅳ. 참고자료

<표 4-1> 시·도 교육청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107
<표 4-2>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109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 직종,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가 성희롱·성폭력의 법령상 개념

-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은 구별됨. ‘성폭력범죄’는 형법을 기본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둬.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둬.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 체계

성희롱	구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 양성평등기본법(여성가족부)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p>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 형법 •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p>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p>	<p>법적 정의</p>	<p>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p>
<p>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에 제소</p>	<p>법 적용</p>	<p>형사처벌</p>

학교 관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유네스코 개념

유네스코와 UN Women(2016)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교 관련 젠더 폭력(school - related gender - based violence)'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학교 내·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 행동 또는 위협을 말하며, 젠더에 대한 규범과 고정관념의 결과로 행해지고 불평등한 권력(power)의 차이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을 말함. 여기에는 언어적 폭력, 괴롭힘(bullying), 성폭력·성희롱, 강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이 포함됨.

- ✔ 학교 관련 젠더 폭력은 학교 안, 학교 주변, 등굣길 또는 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음.
- ✔ SNS, 이메일, 휴대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및 '온라인 길들이기(online grooming)'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포괄함.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개념을 기본으로 함. 이에 더해서 학교 내 구성원이 대상이므로, 학생이 관련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행위 학생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짐. 교직원 관련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권보호, 징계 및 조치가 이루어짐.
-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상, 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상 성희롱 등의 성비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법령상 개념으로 볼 때 성폭력이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 규정을 대신하고 있는 반면, 성희롱의 경우 해당 범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 개념 정의가 한정적임.
- 본 매뉴얼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을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성적(性的)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性的)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관련 판례에 근거)
-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교직원(성인)일 경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근거)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가 행위 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성희롱

-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학대

-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대상별 분류

아동·청소년 성희롱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성폭력

-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의 동의를 있더라도 처벌됨.

청소년성폭력

-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성폭력

-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1. 친족성폭력

- 법률에서 정한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에 의한 성폭력으로, 4촌 이내의 혈족(친부모, 친형제, 조부모, 이모, 외삼촌, 백숙부, 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척 관계로 의붓아버지, 형부, 제부, 의형제와 같은 사실상 관계의 친족을 포함)에 의한 성폭력을 ‘친족성폭력’으로 분류하며 가중처벌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임. 특히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는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함.
-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이며, 아버지(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유아 또는 아동기 때 시작되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됨. 대부분 지속적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횟수를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음.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자들이 폭력, 협박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큼.
- 피해자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움. 피해 직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된 경우는 적고, 가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움. 다른 가족이 알게 되거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묵과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2. 데이트(성)폭력

- 데이트폭력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말함. 예를 들어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구타하는 행위,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 데이트상대를 위협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에 해당됨.
- 데이트성폭력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함. 데이트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함.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데이트폭력은 '사랑 싸움' 등으로 축소되기도 함. 그리고 관계의 특성 상 피해자는 개인정보와 취약점 등이 가해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함.

3. 그루밍(Grooming)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성범죄를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그루밍 과정은 복잡하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침. 먼저 잠재적 가해자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선택해서 대상(잠재적 피해자)이 바라는 바(특별한 관심, 애정, 선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음.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만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며 (sexualizing) 이러한 성적 관계를 정상화시킴(normalizing). 이후 비밀 유지 및 관계의 상실 등을 부각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를 계속 유지함.

4.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 실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분위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문항)은 다음과 같음.

<표 1-2> 성희롱 유형별 예시

성희롱 유형	행동 예시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치마길이 확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등)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
언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수업시간에(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시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나에게 컴퓨터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여성을 성적대상화한(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나에게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다 2차 피해

1. 2차 피해 개념

-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함.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언동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말,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함.

2. 2차 피해 관련 법

-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2차 피해에 대한 피해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2차 피해를 금지하고 있음.

<표1-3>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금지 조항

구분	피해 주장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p>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대응 절차에서 조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14조 제7항)고 명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3. 2차 피해의 원인

-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성희롱·성폭력방지 체계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피해 구제 절차 상의 결함이 핵심 원인이며, 문화적으로는 성차별적 문화가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었음.¹
- 피해 구제 절차 단계별로 가장 많은 피해는 초기 단계보다는 조사처리 단계와 후속 조치 단계에서 발생하였고, 다양한 가해 주체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함. 2차 가해 행위자 유형에는 구제 절차에 참여한 다양한 단계별 담당 인력,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해자의 측근, 조직 구성원, 노동조합, 피해자 본인의 가족 등이 포함됨. 구제 절차 단계별로 2차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조사처리 단계에서는 구제 절차에 참여한 담당자에 의해,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주로 가해자의 측근, 구성원, 피해자의 상급자 등에 의해, 사건 종결 이후에는 가해자의 인맥과 구성원에 의해 조성된 사내 여론이 가장 힘들었던 요인으로 파악됨.

4. 구제 절차 단계별 2차 피해의 가해 행위 유형

사건의 인지 및 접수 단계

학교 관리자, 교사, 교직원, 고충처리 담당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 방치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출·유포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
-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용
- 사건의 신고 접수를 방해
-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
- 교사나 교직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퇴사 종용·회유 등 피해자를 괴롭힘

조사처리 단계

조사처리 담당자, 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

- 2차 가해 행위 방치, 기관 내 소문 방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 등 미숙한 조사
- 조사 내용 유출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
- 성희롱 발언 등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무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연동
- 고압적 태도, 위협적 발언 등 불공정한 조사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중용

종결 및 후속 조치 단계

- > - 2차 가해 행위 방치, 학교 내 소문 방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¹ 구미영 외,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5. 가해자 유형별 2차 피해의 가해 행위 유형

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 유포
- 피해자와의 합의사항 불이행
- 측근을 동원하여 피해자 괴롭히고, 허위 증언 교사
-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
- 조직 내 지지자 그룹 형성
- 측근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야기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

가해자 측근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학교에 찾아가 난동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보호자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괴롭힘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진술 거부
- 괴롭힘, 수업 등에서 협조 안 함
- 가해자 측근 상급자가 근무상의 불이익을 줌

구성원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
- 서로 피해자의 신원, 사건 내용을 캐묻거나 유포
-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 유포
-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
- 사건을 선부르게 판단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발언
- 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 조성

스쿨미투 -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사례²



“어릴 때라 몸쓸 짓 할 수도 있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별나네”
 “성폭행 피해자들은 옷을 야하게 입어놓고 할 말이 있냐”
 “사귀는 사이 아니었냐? 원래 행실이 안 좋았다”

“꽃뱀 아니냐?”
 “(스쿨미투 문제제기 시) 너도 메갈이냐? 김치녀냐?”
 “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상한 소문내지 말고 공부하자”

라 디지털 성범죄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 현행 법률에 의거, 성범죄로 인정되는 일부 폭력을 의미함. 현재 성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피해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복제, 합성, 유포협박, 저장 및 전시하는 행위를 포괄하며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함.
- 이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의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판매 등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 그러나, 실제 가해 행위 유형에는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했던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나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을 제작하여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 그 양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가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유형은 더 새로운 유형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문화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 ‘촬영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했던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됨.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음.

² 윤명화(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피해자 관점에서 본 스쿨미투 지원과 학교의 회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표1-4> 가해 행위별 유형 3

촬영물 이용 성폭력

유형	성격	예시	적용법률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인구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 (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아청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소지·구입·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4항
상습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행위를 한자는 가중처벌함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5항

3 <출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업무 매뉴얼(내부용), 2020.06.16, 6~7p

허위 영상물 이용 성폭력

유형	성격	적용법률
합성 제작	·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함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유포	·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재유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제2~3항
상습적 행위	· 상습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또는 유포 행위를 한자는 가중처벌함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제4항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성착취

유형	성격	적용법률	
아동 청소년	그루밍 성폭력 성착취	· 아동 성착취 촬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아동 성착취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채무·위계·영업 등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3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상습범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배포한 자는 가중처벌함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아동복지법 제72조
	협박 강요	· 아동·청소년에게 폭행·협박 또는 채무·위계·영업 등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성인	성착취 협박 강요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유포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37장 제323조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유형	성격	예시	적용법률
사진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아동, 청소년의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 	정보통신망법 제10장 제70조 형법 제33장 제307조, 제33장 제31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
사이버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성희롱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제10장 제70조 형법 제33장 제307조, 제33장 제311조

3.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 2020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바 있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기반의 가상 상황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주거 장소 혹은 공공 장소 침입, 강간, 준강간, 집단 강간 등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또한 ‘조건만남’과 같은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에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표1-5>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조항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p>	<p>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p>	<p>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	<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p>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p> <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p>	<p>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p> <p>[본조신설 2020. 3. 24.] [시행일: 2020. 6. 25.]</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p>	<p>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본조신설 2020. 5. 19.]</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p>	<p>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0. 5. 19.></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p>	<p>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본조신설 2020. 5. 19.]</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p>	<p>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p> <p>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p> <p>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p> <p>[제목개정 2020. 6. 2.]</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p>	<p>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p>	<p>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p> <p>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p> <p>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p> <p>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p> <p>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p> <p>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 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p> <p>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p> <p>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p> <p>[전문개정 2008. 6. 13.]</p>
<p>형법</p> <p>제283조(협박, 존속협박)</p>	<p>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p> <p>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p>

5.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온라인그루밍⁴

-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길들이기)하는 성착취 행위를 의미함. 대표적인 온라인그루밍 행위에는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포함됨.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그루밍은 디지털성범죄의 시작임. 온라인그루밍은 그것을 이용해 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성매수알선 범죄로 이어지는 디지털성착취의 연쇄고리의 중요한 요소임.

청소년에게 발생한 온라인그루밍 사례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0대 성인 A와 14세 청소년 B가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접근하여 매일 B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과 용돈을 보내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과 함께 B에게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신을 이해해 주고 챙겨주는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A는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A의 행각은 B의 보호자가 우연히 B의 휴대전화 기기에서 이 둘의 대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자발적으로 보낸 촬영물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사업 강사교육(보수과정) 교재 참고

사진 합성

- 이미 공개된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 친구·선호배·동료 등 지인 여성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함. 지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 의뢰하는 사람,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남성에 동조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위협과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람, 합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등에 이용하는 사람 등 각각의 행위가 더해져 피해가 만들어지고 있음.

청소년에게 발생한 사진합성 사례



같은 반 남학생이 여학우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합성 전문 계정에 의뢰하여 포르노 배우의 신체와 합성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의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와 함께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여 남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문자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4 <출처>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실 카드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친절한 Q&A>, [페이스북]

5 「중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개정판 표준안」(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에 수록된 사례

불안 피해

- ‘불안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함.

초등학생에게 발생한 불안 피해 사례⁶



안녕! 내 이름은 <하늘이>야. 요즘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 갑자기 야한 이야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누가 야한 동영상을 보고 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했고, 나도 성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던 중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됐어. 그 사람은 <먹구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었어. 먹구름과 나는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그러다가 먹구름이 내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진짜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어. 야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상상을 했어. 친구들이 호기심과 부러워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상상도 했어. 나는 먹구름에게 내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만약 내 얼굴과 몸이 나온 사진을 먹구름이 인터넷에 퍼트리면 어쩌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쩌지, 부모님까지 알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잤어. 먹구름에게 내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내준 거라며, 안된다고 했어. 지금 너무 후회되고, 걱정돼. 이제 어떻게 하지?

* 이 사례는 초등학생 디지털성범죄 상담 사례를 각색한 것임

기존의 성폭력과 다른 점⁷

발생 공간의 특성

-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함
-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음
-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사진/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음
- 직접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함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고(89%), 아는 사이일 경우 연인 사이가 가장 많음(46.68%)
- 비동의 성적 촬영 및 유포의 경우 전, 현 데이트 관계가 40%로 가장 많음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나, 직장/학교 등 아는 관계에서의 성적 희롱, 이미지, 영상, 악플 등이 게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6 「초등학교 고학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개정판 표준안」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에 수록된 사례

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특별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23-28p

기존의 성폭력과 다른 점

가해자의 특성

-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음
-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음
-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의 특성

- 비동의 성적 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 발생
-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어려움을 겪음
-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여성단체 및 수사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를 재유포,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의 경우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함

수사/재판 과정 시의 특성

-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진, 영상이 노출됨으로써 피해자가 재피해를 겪을 수 있음
- 유포 위험이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함
- 사진이나 영상물을 동의 하에 촬영했을 경우 '정숙한 여자' 또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편견을 경험하기도 함

관련 범죄의 특성

- 가상 상황 뿐 아니라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폭력, 데이트 성폭력 등 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최음제 등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 연결

기술적 특성

- 피해 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

사회구조적 특성

- 거대 웹하드 업체 등 유통자본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움
- 사이버장의사/디지털장의사 등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상업화되어가고 있고, 신고/고소가 어려울 시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과 달리 '몰카', '호기심' 등의 언어로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함
- 재유포의 우려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의 폭로나 고발이 어렵고 문제해결이 개인화되며, 기존 성폭력에 비해 전문지원시설이 부족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I.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1. 사건처리 흐름도
2. 절차 단계별 설명
3.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4. 대상 유형별 대응 절차
 - 가.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 나.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 다.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1

사건처리 흐름도

사건처리 흐름도

사안처리



- ① 상담 신청
- ② 상담 접수 및 실시
- ③ 초기대응



- ① 신고접수
- ② 접수 보고
- ③ 초기대응



- ① 신고
- ② 공간분리(필요시)
- ③ 피해자 상담



- ① 전담기구 조사 개시
- ② 조사 완료
- ③ 조사 결과 보고
- ④ 통지



- ① 위원회 개최
- ② 심의 및 의결
- ③ 결과 보고
- ④ 통지



- ① 성희롱 성립 시/
징계조치 후 종결



- ① 피해자 보호
- ② 가해자 조치
- ③ 가해자 조치사항 기재
- ④ 결과 보고
- ⑤ 통지

사후처리



- ① 피해자 적응
- ② 재발 방지 교육, 예방 교육
- ③ 2차 피해 발생여부 모니터링
- ④ 전수조사, 실태조사(필요시)

2

절차 단계별 설명

2

절차 단계별 설명



인지 및 상담

상담 단계는 피해자가 학교에 최초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학교의 사안처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고충상담원이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담부서를 찾아와서 상담 하는 경우와 고충상담원이 내부직원 또는 외부기관(언론, 경찰 신고, 각 부처 신고센터)에 의해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혹은 기타 교직원이나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래의 신고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및 접수

신고는 사안 인지 즉시, 상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신고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사건에 대해 인지하는 모든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대응

긴급조치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 이후의 1차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응급 처치나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리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안조사⁸

조사는 접수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조사 담당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제출 내용이 취합된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 회복이나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모든 회의록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보고나 통지, 그리고 징계 및 후속단계에서 활용되도록 합니다.



징계

위 심의 단계의 심의결과, 사건이 징계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에게 처분을 하는 단계입니다. 심의 단계의 심의결과, 사건이 징계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 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위의 정도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종결

종결은 사안처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실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사안의 종결이 진정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사후처리

사후처리는 사안이 상담 - 신고 - 조사 - 심의 - 종결 단계를 거쳐서 종료된 이후의 사안 처리를 일컫습니다. 사후처리는 사안의 재발방지, 예방교육, 상담창구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8 <출처>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3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3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피해자 대상관계에 따라 다음 <표 2-1>과 같이 학교 내 담당 주관위원회가 구분됩니다.
-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 3),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육부, 2020. 1.)'에 따라 사안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설치)는 피해자가 학생인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원칙상 개최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는 가능하나, 전담기구(학교 설치)의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 된 사안은 제외
-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자가 교원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을 위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성고충심의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기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표 2-1> 피·가해자 대상 관계별 주관위원회

가해 피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원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⁹ · 성고충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교원)	·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피해교원)
직원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⁹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피해교사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도 가능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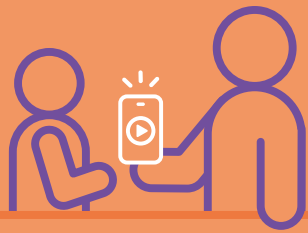
- 교육청 및 학교별 일부 위원회의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필수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주관위원회는 다음 <표 2-2>와 같이 구성의 법적 근거, 성격, 처리 사안 등이 달라집니다.
- 학교장은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합니다.

<표 2-2> 관련 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규칙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교원지위법
성격	법정기구	자치기구	자치기구	법정기구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4

대상 유형별 대응 절차



가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4

대상 유형별 대응 절차

가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사안처리 절차 체계도



- ① 인지 및 상담



- ① 신고 접수
- ② 교육(지원)청 보고
- ③ 수사기관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④ 보호자 통보



- ①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 ② 2차 피해 방지



- ① 관련자 사안 조사
- ② 조사 결과 보고
- ③ 보호자 통보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피해자**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및 조치 결정)

- 가해자**
- ①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②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① 조치 내용
- ② 조치 이행
- ③ 조치 불복
- ④ 사안 관리
- ⑤ 보고 및 통지



- 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② 예방교육
- ③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단계별 처리절차



1. 상담

- 전문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등 교사가 피해자(학생, 보호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내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타 기관(수사기관이나 외부 상담 등)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 동료 학생이나 교직원도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기타 사적인 통로(SNS 등)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교원이 가해자일 경우 학생들이 동료 교사인 담임이나 사안처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소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평상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사안 인지, 신고 및 피해자 통보는 현장 상황에 맞춰 동시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2. 신고 및 접수

1) 신고 접수

- 신고 주체: 피해자(학생, 보호자), 목격한 동료 학생, 목격한 교직원, 조력인
- 사안인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성고충 상담창구¹⁰는 사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 이때 담당자는 모든 접수 사안에 대해서 접수 대장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내 각종 양식 활용하여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선 유선 보고 후,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시 지역에 따라 보고 부서 및 담당자가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서식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¹⁰ 성고충상담창구 인원 구성 및 역할은 본 매뉴얼 60p를 참고

3) 수사기관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신고) 경찰청(☎ 112)/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117), 학교전담경찰관
- (상담)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학교장)과 관련 종사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담당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장,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급적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잘 들어주고 신고 후 과정 안내, 피해 지원,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해당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보호자 통보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담당자는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합니다.



3. 응급조치 및 초기대응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선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은 필요 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며,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나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응급이송 시 보건교사 또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교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보건실 치료 시, 치료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병원 진찰과정은 피해학생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한 교사는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줌으로써 피해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사안을 신고 및 접수를 받은 교사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 기관에 의뢰합니다.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증거로써 CCTV 화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역시 동 지침에 근거하여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3호) 2020.7.20 일부개정
출결상황 관리 등 별표8_2_결석_나 출석인정_*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출결상황 관리 등 별표8_2_결석_나 출석인정_*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 피·가해자 분리 조치는 최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안정, 신상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보호 등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공간분리 등 일방적인 조치는 불가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가급적 수렴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협의하여 학교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차 피해 방지

- 사안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사실과 피해자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비밀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교원은 피해학생의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성고충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 유지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자 이외에 목격자 등,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안관련 철저한 비밀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목격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청 주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안을 조사하여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1) 관련자 사안 조사

-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성고충상담창구 담당 교사는 최초 인지 교직원의 사안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교직원에 대한 조사는 성고충상담창구에서 진행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 교직원 면담 시 육하원칙에 맞게 조사합니다.
- 전수조사 이후 결과에 피해학생이 다수로 드러난 경우, 사실 확인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학생들을 다른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받은 관련자들이 조사 내용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시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 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절차 제공이 이뤄져야 합니다.
- 조사자와 대상자 모두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서면, 이메일로 조사문답서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목격자 등) - 가해자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학생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며 피해자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기록, 녹음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표 2-3> 대상별 조사 주체 및 조사 내용

주체	대상	조사내용
학교폭력전담기구	피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상담자와 상담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사과, 징계 등)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상담창구	참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피해상황 시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함
성고충상담창구	가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교직원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설문 시 고려사항

-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안의 사실 여부 파악 혹은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외부기관(교육청,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명으로 응답하여야 사안이 실제로 조사·수사로 이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설문 도입부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조사 결과 보고

- 조사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보고합니다.
- 사안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추후 심의위원회의 보고 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근거 자료, 교육청 보고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 통보

- 학교는 사안 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성폭력사건 대응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4)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서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 76p 참고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준비(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에게 송부합니다.
- 서면 출석요구서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B 교직원'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 참조



5. 심의 및 조치 결정¹¹

학생 보호 조치의 심의 및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므로, 사안 조사 후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참조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서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¹¹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을 참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및 조치 결정)

준비 단계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발송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 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합니다. 피해·가해 양측의 대면접촉이 상호 간에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시간 및 장소를 분리 해둡니다.
-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진술로 대체하거나, 수사기관 사건담당경찰, 상담기관 상담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
-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사본 등을 준비해 뒤야 하며, 이때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모든 자료는 '김OO' 또는 'A학생' 등 익명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자료는 회의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개최 단계

- 회의록은 시작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서약서 작성)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피해·가해 측의 대기 상태에서 진행(진술 시에만 참석, 서면 진술 가능)합니다.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사안조사 내용, 피해·가해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사항 등(교육(지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피해·가해 측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조사 결과와 함께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피해학생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 진술(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이 진행됩니다.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담기관 상담원, 수사기관·사안담당경찰관)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심의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항목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1. 피해학생 보호
 2.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3. 기타 사항(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조치 결정

- 피해자 보호조치 및 교육 조치를 결정합니다.

폐회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심의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 피해자 측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결과 통보 시 피해 및 가해측에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해야 합니다.
-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가해 교직원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성립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됩니다. (다만 짝수 구성을 유지할 경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될 수 있습니다.)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성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학교장 포함 3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하여 성희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 학교장이 가해자일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 및 심의, 징계 결정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의사항 안내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는 가능하며, 위원회가 제척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비밀유지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하나의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제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단계

- 회의록은 시작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판단하고 사안의 경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조사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시 학교에 해당 사안 조사내용과 함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조사 시 조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위원회에서 위원 제척 사유를 검토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시 당사자에게 기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개최단계

- 참석자 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서약서 작성)
- 위원들의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피·가해 측의 대기 상태에서 진행(진술 시에만 참석, 서면 진술 가능)됩니다. 이때 피·가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대기장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결과 보고 (간사 또는 조사자)

- 사안조사 내용, 피해·가해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사항 등(교육(지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조사 결과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고, 피해학생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 진술(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이 진행됩니다.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담기관 상담원, 수사기관·사안담당경찰관)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듣습니다.
- 가해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위원들은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가해자는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 단계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서 아래의 사항들 논의 가능)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판단
- 피해자 보호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 피해 사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논의하여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록에 기록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참고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여성가족부, 2020년)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교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폐회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며,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자와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심의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해자 별로 따로 조치 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결과 통보 시 피해 및 가해측에 2차 피해 발생시 추가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불복 시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학교장에게 심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표 2-4> 성고충심의회위원회 진행 단계와 수행 내용

인지 및 초기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문유포, SNS 등에 의해 사건 인지 시 사건관련인 면담 · 상담일지 기록 및 신고접수 절차 안내 · 신고서 접수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성희롱·성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위원장에게 보고 검토 필요 ·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 · 가해자가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일 경우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 · 심의회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 필요 시 피·가해 분리 긴급조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신청서 접수 · 피해자 - 가해자 각각 별도 대면 조사 실시 ·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 - 가해자 순으로 실시 · 증거 자료 확보 · 추가 피해사실 확인 시 조치에 대한 결정(추가 조사 및 전수조사 실시)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6인 구성(남녀 한쪽 성이 6/10이 넘지 않도록 함) ·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립 여부는 반드시 판단 · 심의회위원회 논의 안건
징계 (성희롱, 성폭력 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위원회 개최 · 징계 처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이후 모니터링(2차 피해 발생여부) · 학생의 일상생활 유지 등

유의 사항

-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폭력 사안을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성고충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안을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립 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6. 징계 및 종결

1)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병과 가능)

- 심리상담 및 조연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일시보호
- 학급교체

행위 교직원 조치

- 서면 사과(강제할 수 없음)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수업배제, 업무배제 및 수사개시 통보 시 직위해제 등
- 특별교육 이수
-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 학교장 또는 학교 법인에 의한 인사조치(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경우)
-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인사조치 건의(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경우, 아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참고)
- 수사기관 추가 신고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 하여 의결
- 서면 사과는 가능한 조치이나, 동의 내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인사조치
 -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해지 및 해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 기관에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

2) 조치 이행

- 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 조치결과 통보서 송달합니다. 통보서에는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등 불복 절차 안내를 기재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집행은 7일 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
- 학교장은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됩니다. 단, 학교장의 인사재량권이 있는 교직원(예를 들어 기간제교원, 방과후 강사 등)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인사조치'라면 학교장의 임용권에 따르도록 합니다.

3) 조치 불복

- 조치결과 통보 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피해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행위(가해)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피해학생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 교직원 이 소청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4) 사안 관리

-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이 제시하는 회복 방법을 최대한 수용(예시: 심리상담 기관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연(1호)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교장은 가해 교직원 조치 이행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보고 및 통지

- 사건처리 단계별로 일자, 시간, 대상, 주요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사건조사 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를 학교장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신고충사건 처리 후의 최종 조치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 종결)



7. 사후처리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추가조치 하여야 합니다.
- 학생 치유 활동,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학교 단위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학내 상담 창구 안내와 동시에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전보 조치 또는 재발방지교육, 특별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 성고충담당자가 사건 접수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교육(자원)청,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입 교직원의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3)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사안 발생 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전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와 성인지 감수성 및 학교문화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이 구분되어서 조사되어야 합니다.
- 교직원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 등의 경우, 학교 내 조직 문화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 변화를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실시 이전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 2차 가해 금지, 상담창구 등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을 작성해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시 유의 사항

- 조사 실시 당일에는 조사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는데, 보고 시 익명 처리하고 모든 경우에 보안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나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사안처리 절차 체계도



- ① 상담 인지 및 신고 접수 절차 안내
- ② 피해자 보호조치



- ① 신고서 접수
- ② 학교장 및 고위임원일 경우 교육(지원)청에 이관



- ① 관련자 사안 조사 및 증거 수집
- ② 조사 결과 보고
- ③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①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②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① 조치결과 이행
- ② 조치결과 불복



- ① 사안관리
-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

단계별 처리절차

1. 상담

- 피해 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피해 교직원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직접 상담·신고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용가능한 법적 구제절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습니다.

<표 2-5> 성고충상담원 역할 및 구성요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 교직원 상담 ·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심의 절차 진행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정 및 중재
구성요건(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각각 1인 이상 교원을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안처리에 적극적인 교원 ·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원 ·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교원 · 공정한 판단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교원 · 성고충상담원이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조정 및 중재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를 권장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2020년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의무화)

<표 2-6> 상담 단계에 따른 상담기구의 주요 업무

상담 단계	상담 개요	주요 업무
접수 상담	접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 녹음 동의 - 심리적 지지를 통한 라포 형성 - 학교규정 및 사안 처리제도 안내 - 비밀유지원칙 및 피해자 보호 안내
접수 상담	고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당사자 관계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안내 · 사안 개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형태 및 유형, 피해특성, 지속 기간, 반복 정도 등 · 증거 정황 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증인 인적사항 및 연락수단, 증거, 일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진료기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단계에서는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와 증거확보 관련한 안내만 하고 구체적인 증거 제출은 신고 후에 도록 안내할 수 있음 · 피해자 대응 및 가해자의 전후 행동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 경험 이후 피해자의 행동(누구와 해당 사안을 상의했는지,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사안 발생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가해자의 이전 유사 언동 여부 등 · 상담 신청의 계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관련 상담의 계기, 동기

상담 과정	해결 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사안 해결 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에 대한 이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것, 예상되는 최상의 상황,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 · 가해자, 상담기구, 학교에게 원하는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에 대한 책임, 재발 방지, 가해자 조치 혹은 징계요구, 공간 분리,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치유 회복 지원
	해결 방안 검토 및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해결방안의 장단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 학교(상담기구)를 통한 중재 해결, 학교의 조사 및 심의 해결,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해결, 사법적 해결 · 상담신청인의 원하는 해결방안 선택
상담 종결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관리, 개인정보 비실명, 별도 보관, 기밀 유지, 필요 시 문서결재

교직원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은 은폐·축소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재발하거나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학교장과 성고충상담원의 사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학교장이나 성고충상담원이 사안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사안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급기관 또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조사가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학교 내부의 성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교내 창구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기관을 안내합니다.
- 교내 상담창구의 이용과 소송 등은 같이 진행 가능함을 상담 과정에서 안내되도록 합니다.
- 비정규직 교직원이 관련되어 있을 때 비정규직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안이 은폐·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기관 내부 징계는 해당 사안의 수사기록 등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려 처분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처분 전이라고 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접수

- 신고 및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신고서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며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합니다.
- 피해 교직원이나 가해 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가해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 가해 교직원의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당사자 간 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고충상담창구는 안내 및 지원의 기능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 * 중재 과정에서 가해 교직원과 피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습니다.
 -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가해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직원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

-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부 절차 진행
- 당사자 간 합의
- 민·형사 소송 청구
- 심리적 상담 필요 시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을 연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고, 접수 시 유의 사항

- 교육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2015년 9월 21일 발표) 관련 계획에 근거하여, 교원간의 성폭력 사건도 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 가능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상담 내용의 누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담록에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3. 조사

1) 관련자 사안 조사 및 증거 수집

- 조사는 피해 교직원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합니다.
-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사안처리 매뉴얼 기준으로 관련자 사안 조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안조사는 피해 교직원, 참고인, 가해 교직원 등에게 진술 및 서면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를(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등)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다수 교직원이 관련된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조사 가능합니다. (관련자 공모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하루를 넘지 않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피해 교직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련자와 조력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 조사 진행 시 대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습니다.

2) 조사 결과 보고

- 성고충상담원은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고충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 피해 교직원이 원하는 성별의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피해 교직원이 가해 교직원에게 원하는 것(예: 징계, 서면사과, 공개사과, 전보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가해 교직원 조사 시, 가해 교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가해 교직원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와 언행을 유지합니다.
- 피해 및 가해 교직원 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삼자로부터 목격담을 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성고충심의회위원회 개최 준비

- 심의회위원회에게 개최 예정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파·가해 교직원은 심의회위원회 개최 당일에 출석 희망 시 출석 가능함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B' 교직원 등,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¹²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학교장이 지명한 사람이 합니다.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성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학교장 포함 3인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 외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 학교장 및 고위직이 가해자일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조사 및 징계 결정 등을 처리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의 사항 안내

- 심의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면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 가능합니다.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

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단계

- 회의록은 시작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판단하고 사안의 경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조사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시 학교에 해당 사안 조사내용과 함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조사 시 조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위원회에서 위원 제척 사유를 검토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시 당사자에게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개최단계

- 참석자 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서약서 작성)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피·가해자 모두 대기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진술 시에만 참석, 서면 진술 가능) 이때 대기 장소를 분리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¹²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2020)을 참고

-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사안 조사내용, 피·가해자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사항 등(교육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피해·가해 측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 조사 결과와 함께 반드시 보고합니다.
-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자는 반드시 출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피해 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생각을 듣습니다.
 - 가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원들은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가해자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심의 단계**
- 성희롱·성폭력 대한 판단
 - 피해자 보호조치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피해 사실이 성희롱, 성폭력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논의하여 심의회의록에 기록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여성가족부, 2020년)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성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폐회**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합니다.
 -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임. 다만, 피해·가해 교직원이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피·가해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가해 교직원, 심의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조치 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결과 통보 시 피해측에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 학교장에게 심의결정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 상급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결정을 통보합니다.



5. 징계 및 종결

피해 교직원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부서 전환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 교직원 조치

- 서면사과(강제할 수 없음)
- 피해자와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부서 전환
-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 인사 조치
-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 가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하여 의결
- 인사조치
 -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해지 및 해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기관에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

1) 조치결과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피해·가해 측에 조치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학교장은 피해 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 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조치결과 불복

- 내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를 피해 교직원 및 가해 교직원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6. 사후처리

1) 사안 관리

- 피해 교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피해·행위 교직원에 대해 조치 이행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합니다.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합니다.
- 사건처리 단계별로 일자, 시간, 대상, 주요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사건조사 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를 기관장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고충사건 처리 후의 최종 조치결과 통지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 종결)

2) 재발 방지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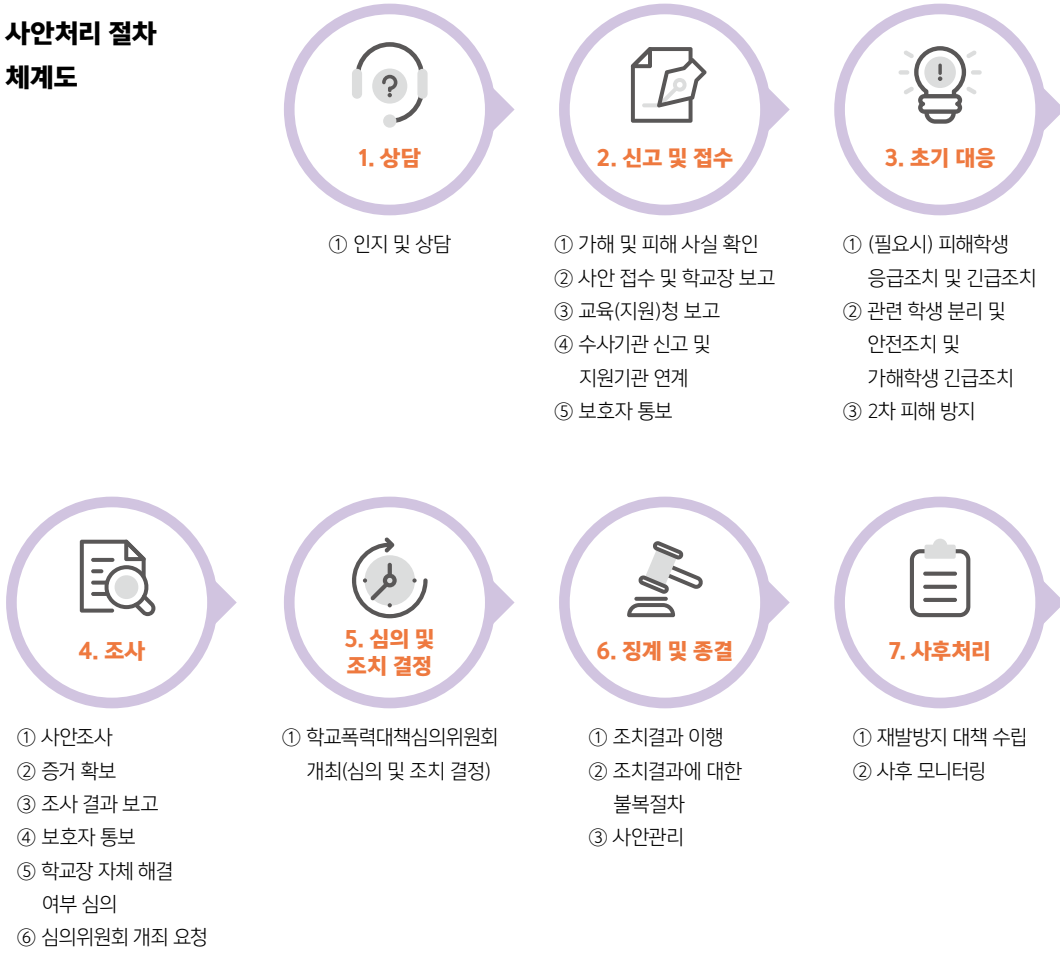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고충 상담 창구 안내와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합니다.
-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사안 발생 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를 권장합니다. (신입 교직원의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 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전보 조치 또는 재발 방지 교육, 특별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 성고충담당자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다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사안처리 절차 체계도



단계별 처리절차

1. 상담

- 담당자는 학생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과정, 준비 사항,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줍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의 상담 사실과 내용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신고 및 접수

- 피해자(학생, 보호자)가 직접 신고
- 피해자(학생, 보호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
- 교내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 동료 학생이나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
- 타 기관(수사기관이나 외부 상담 등)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적인 통로(SNS 등)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등
- 사안 인지, 신고 및 피해자 통보는 현장 상황에 맞춰 동시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 성희롱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성희롱 판단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및 접수 단계에서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 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확산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교사가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합니다.

1) 가해 및 피해 사실 확인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안을 신고받은 교원은 신고 사안의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의심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 신고받은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전문 지원기관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 이때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교원은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신고한 피해자와 목격자 및 관련자들에게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Q&A 가해학생이 먼저 사안을 알리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 신고를 받은 교사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우선 사실 확인을 해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에 따라 사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안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 및 신고가 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최초 인지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최초의 신고 내용을 보관합니다.
- 접수 사실을 신고자,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3)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관할 교육청 양식 이용하여 서면보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원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선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¹³
- 보고할 부서, 절차 및 내용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폭력담당교원은 사전에 교육청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여,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4) 수사기관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신고) 경찰청(☎ 112)/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117), 학교전담경찰관
-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 수사기관의 신고는 급한 경우 우선 구두나 유선상으로 조치 후 공문으로 신고하여 신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도, 학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¹³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 31p

성폭력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담당자는 신고의무자인 학교(교장·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줍니다.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후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해당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보호자 통보

- 가족, 친구관계 등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합니다.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3. 초기 대응

1) (필요시) 피해학생 응급 조치 및 긴급조치

- 피해학생은 필요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며,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나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 응급이송 시 보건교사 또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성을 가진 교직원 동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보건실 치료 시, 치료기록을 남겨둡니다.
- 병원 진료 과정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동행한 교사는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줌으로써 피해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모든 교원은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화면을 확보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한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관련 학생 분리 및 안전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사실과 피해자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밀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학생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전문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전문 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 사건 처리 중에 있거나 종결된 후 시설 입소 후 전학 온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가해자 분리 조치는 최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안정, 신상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전학 강요 등 일방적인 조치는 불가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가급적 수렴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협의하여 학교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유의사항

- 사안이 처리되는 동안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제6호 출석정지'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안교실, 상담실 등을 통한 피·가해자 분리를 통해 위 조치를 대체할 만한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향후 반드시 추인을 거쳐야 합니다.

3) 2차 피해 방지

- 학교폭력 전담 교사 및 성폭력 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유지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이외에 목격자 등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4. 조사

1) 사안조사

- 사건에 대해 조사 할 때,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증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건을 조사하는 교원은 피해학생의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조사에 있어서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의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피가해 내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안 처리 관련 서식 등을 활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 *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 정도, 피해 지속 시간, 현재 상태, 관계, 또 다른 가해자 및 피해자 여부,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 여부, 신고 및 고소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 피해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 피해자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며 피해자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기록(녹음 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목격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안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조사 시 조사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자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 사안조사 시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안은 인지 수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교원은 수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채취해 두도록 권유합니다.

3) 조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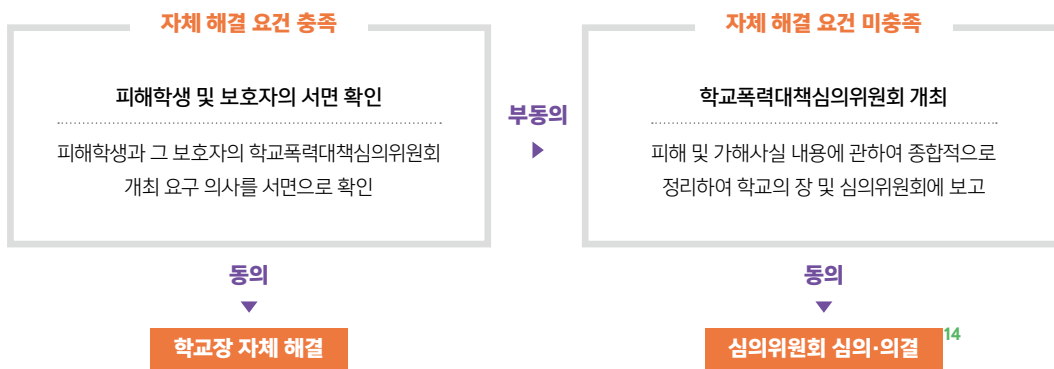
- 최초담당 일지 및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합니다.
-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받은 교육(지원)청은 개최일정을 결정하여 학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필요 시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4) 보호자 통보

- 사안 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5)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합니다.
-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미개최(자체 해결)에 동의할 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합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학교자체 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을 받는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혹은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준비(교육(지원)청)

- 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들을 ‘A’, ‘B’ 학생 등으로 익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안의 관련성에 의해 제척되거나 기피신청 및 회피가 가능하며,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 학생 측이 참석안내서를 통해 사안개요를 안내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 44p



5. 심의 및 조치 결정¹⁵

<표 2-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수행 내용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피해·가해) 학생 면담 · 주변학생 조사 · 설문조사 ·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사안내용 검토 및 처리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 ·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결정 · 필요시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50인 이하 위원(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 권고) ·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7일 이내 연기) ·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견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면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 출석 가능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진술로 대체하거나, 수사기관 사건담당경찰, 상담기관 상담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및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피해학생은 7일, 가해학생은 14일 이내에 조치이행 · 가해학생은 조치 거부나 회피 시 추가 조치 가능

¹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을 참고

1)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및 조치 결정)

준비단계

- 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 시간 및 대기 장소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는 '김OO' 또는 'A학생' 등 익명처리는 필수로 시행합니다.
- 모든 자료는 회의 현장에서 배포해야 합니다.

개최 단계

- 회의록 작성을 시작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서약서 작성, 위촉서 발송)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피해·가해 측이 대기 상태에서 진행(진술 시에만 참석, 서면 진술 가능)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보고합니다.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
- 피해학생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 진술(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을 듣습니다.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담기관 상담원, 수사기관·사안담당경찰관)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 가해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원들은 가해학생에게 질문하고 가해학생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심의 및 긴급조치
보고·추인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 피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후 추인여부 논의

**피해학생·가해학생
조치 결정**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
- 보호조치 및 선도·교육조치 결정
 -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교의성
 -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폐회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해야 합니다.
- 회의록 작성
 - *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피해·가해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심의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결과 통보

-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결과 통보 시 피해 및 가해측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표 2-8>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안전여부 확인 (긴급 보호조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 지속적인 성폭력, 협박 또는 보복행위 등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긴급조치 범위는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임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과 지지하기,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도록 유의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후유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관 안내
제2호	일시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성폭력, 협박 또는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학교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 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제4호	학급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 정신적 상처 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측이 원하거나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범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교 시간 조정 및 동반 등)
긴급 보호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보호조치 시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 긴급 보호조치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

행위(가해학생)

긴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 가능
제1호	서면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성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4호	사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조치

행위(가해학생)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한 경우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학생 측에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
제7호	학급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제8호	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가해학생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함
제9호	퇴학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
긴급 선도·교육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조치 시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가해학생 포함한 관련자 모두 분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피해학생 2차 피해 예방 관련자 간의 증거인멸시도 예방 관련 학생을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과 같이 있다가 보호자 인계 등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분리하되 빈 공간에 혼자 두지 않음 사안 확인을 위하여 피해·가해·목격 학생을 대면시키지 않음



6. 징계 및 종결

1) 조치결과 이행

-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집행은 14일 이내 집행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조치이행 거부 또는 기피 시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제11항)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시행령 제35조)

2) 조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 피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소송

- 피·가해학생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안관리

- 관련 전문기관 연계하여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상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피해학생 측이 제시하는 회복 방법을 최대한 수용합니다. (예시: 심리상담 기관 선정)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리상담 및 조연(1호)과 일시보호(2호)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 중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는 성교육·성폭력 전문기관·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7. 사후처리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조직 구성원들의 성차별적 조직문화점검 등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방교육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으로 학기 초인 3, 4월에 성교육과 더불어 시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관리 시 유의사항

-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상황(환경, 정서 등)을 고려하여 회복을 위한 과정과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지원자들에게는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치유를 향한 강한 힘과 용기,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행위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 및 상담 치료 이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사안처리 절차 체계도



단계별 처리절차

1. 상담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고충상담원이 인지 상담 단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립 여부를 예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지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방침, 사안조사, 심의, 징계절차,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안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안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 교직원이 피해자이고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심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 해야하며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 징계에 대한 조치사항 심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피해교직원은 사안 접수 전에 성고충상담원 또는 교권보호업무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고 및 접수

-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사건접수는 사건 종결 후 가해학생의 이의 제기 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작점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 피해 교직원이 신고 및 접수를 거부할 경우라도 신고 및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해 둡니다.
- 성고충상담원이 공식적인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사안을 접수합니다.

1)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유선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가급적 사안을 인지 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보고할 부서는 교육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2)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필요시, 혹은 피해 교직원이 요청할 시에(신고) 수사기관(경찰청, ☎112), (상담)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연계를 합니다.

3) 보호자 통보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3. 초기 대응

1) 분리조치

- 피해 교직원, 가해학생을 포함 한 관련자 모두를 분리,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를 대면시키지 않기 위하여 분리조치를 취합니다.

2) 피해 교직원 안전조치

- 피해 교직원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4. 조사

1) 관련자 사안 조사 및 증거 수집

-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의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시 사안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 파일 등)를 수집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교직원과 가해학생을 조사합니다. 조사의 순서는 피해교직원 - 참고인(필요시) - 가해학생입니다.
- 가급적 대면조사를 실시하며 문답지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 학생의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가 다른 관계유형에 비해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교직원 면담 및 조사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또는 성고충상담창구 성고충상담원이 피해 교직원을 면담하여 조사합니다. 필요 시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장소와 지속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요구 사항(징계 등)을 파악합니다.

참고인 조사

- 목격자가 있을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사

- 가해학생 조사는 학생생활지도부나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가해학생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2인 이상의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강압 및 회유에 의한 조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사건경위, 사실관계 확인, 조사자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안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추후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보고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자료, 교육청 보고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치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준비

-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교원과 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위원들의 경우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B 교직원’ 등으로 익명 처리합니다.



5. 심의 및 조치 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¹⁶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간사) 위원장이 교원위원 중 지정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다만, 교원·학부모·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
-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국립학교 해당)이나 교육감(공립, 사립학교 해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 준비 ▶ 개회 선언 및 인사말 ▶ 제척·기피·회피 확인 전달 ▶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의 사건 조사 보고 및 질의 답변 ▶ 피해 교원 입장 및 발언 ▶ 가해학생 또는 가해 보호자 입장 및 발언 ▶ 피해 교원 조치 논의 및 결정 ▶ 가해학생 또는 가해 보호자 조치 논의 및 결정 ▶ 폐회선언

소집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의 위원장이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사안 조사서, 관련자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
- 대기장소 준비(피해, 가해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위원회 개의 30분~1시간 전에 위원들이 참석토록 하고 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개요, 진행절차 등을 안내

심의사항

- 교권보호 위원회 시나리오 「교권보호 매뉴얼 57p」 참고

¹⁶ <출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교육부, 2019)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1.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 공무원
 7. 그 밖에 각 급의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심의사항

-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 급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성희롱 성립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 성희롱 판단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유의사항

- 피해교직원 보호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혹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위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6호 참조)



6. 징계 및 종결

1) 조치결과 이행

- 위원회의 조치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행위 측에 조치결과 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조치결과 통보서에는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2) 조치결과 불복

- 조치결과 통보 시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피해 교직원 은 조치에 불복시 수사기관에 사안을 신고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재심

- 가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초·중·고등교육법 제18조의 2 참고)
- 이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기한은 교육청 별로 확인이 필요

행정심판

- 가해학생은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행정 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 가해학생은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
- 학교장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3) 사안관리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교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은 66p 참고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내용
 - 가해학생: 자기 이해, 대인관계 능력 증진, 갈등해결능력 및 분노, 스트레스 해소 방법
 -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련된 사항
 - 가해학생은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 재심,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7. 사후처리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학기 초인 3, 4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등 실시 권장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상담 창구 안내와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 해야 합니다.
-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게시판에 상시 게시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 성고충담당자가 사건 접수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I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조치 방안

1.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2.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
대응 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1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1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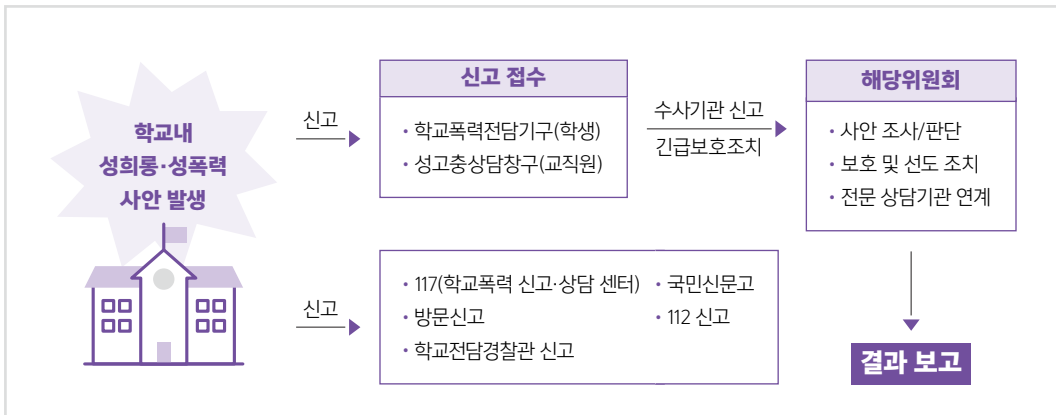
<p>성폭력 피해 의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 사실에 대한 확인 ·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1899-3075), 117, 여성긴급전화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 신고 	<p>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수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p>피·가해자 긴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자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분반 처리) · 응급 및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의 상담실(Wee센터), 외부상담 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자 지지 -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으로 연계 · 관련 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지원)청 보고(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p>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상담, 사안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 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p>사안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일 경우 41p 참고 ·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일 경우 58p 참고 ·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일 경우 68p 참고 ·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일 경우 85p 참고

2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 대응 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 대응 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가 학교



1) 학교장

-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사안의 경우 신고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
 -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 제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 소문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
 - 서로 존중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이 먼저 나서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평소에 시행하는 것이 좋음)
- * 특히, 교내 사각지대(기숙사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함

학교장의 유의사항

-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원을 사건 처리 창구로 일원화하되,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학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문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평소에는 학교 내 양성평등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하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엔 사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사안처리 단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2) 교사

- 교사는 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장이나 교감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
-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음
- 교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문의 및 상담을 해야 함
-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주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킴

<표 3-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책임교사	사안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담임교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춰야 함
보건교사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의료조치를 취하되, 가급적 법의학적 증거 채취가 가능한 전문기관 연계
전문상담(교)사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심리상담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

-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
-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학생의 요구사항과 사실 관계를 파악
- 피해자의 경우 치료와 더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성폭력전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피해학생이 말해 준 내용에 대해 침착하게 반응해야 하며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겪은 일을 축소시키거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축소시키게 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임을 알려줌
-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해 줌

교사의 유의사항

-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의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만일 주변 학생 및 학급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진 경우, 우선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교사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함
성희롱·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건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함
- 학교와 교사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며 공감해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 관련 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 교사는 법에 따라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급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시·도 교육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개발하여 단위학교 측에 배포
-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현장의 요청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
- 교육청은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중하되, 신속하게 처리
- 또한 가해 교직원이 법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무원 복무규정의 징계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거하여 징계 처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참고)

다 학부모

-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징후를 인지하면 바로 학교와 수사 및 지원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함
-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음
-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2차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지지하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IV. 참고자료

1.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2.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3. 사안처리 관련 서식
4. 관련 법률

1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표 4-1> 시도 교육청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지역	전담부서	전화번호	지역	전담부서	전화번호
서울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699	강원	민주시민교육과	033-258-5504
		02-3999-548			033-258-5503
부산	학교생활교육과	051-860-0415	충북	체육건강안전과	043-290-2773
대구	생활문화과	053-231-0504	충남	민주시민교육과	041-640-7434
		053-231-0507			전북
인천	학교생활교육과	032-420-8497	전남	민주시민교육과	
		감사관			032-420-8159
광주	민주시민교육과	062-380-4081~2	경남	민주시민교육과	055-210-5275
대전	학생생활교육과	042-616-8481			055-210-5279
울산	민주시민교육과	052-210-5273	제주	민주시민교육과	064-710-0457
세종	민주시민교육과	044-320-2441			체육교육과
경기	학생생활인권과	031-820-0767			
		031-820-0768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경우와 필요에 따라 외부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상별 관련 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과 기관별 전화번호는 다음 <표 4-2>와 같습니다.

2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2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표 4-2>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대상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 · 피해자의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	1899-307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비, 법적 자문 및 과정 동행 지원	02-883-9284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 지원	132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해바라기(아동/통합) 센터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지원	서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2-3274-1375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 02-3672-0365(위기지원) 02-735-0366~7(상담치료)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통합) 02-3390-4145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통합) 02-2266-8276
		부산 부산해바라기센터(통합) 051-244-1375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위기) 051-501-9117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3-421-1375
		인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32-423-1375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통합) 062-225-3117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62-232-1375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통합) 042-280-8436~7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통합) 052-265-1375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해바라기(아동/통합) 센터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지원	경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1-215-1117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1-816-1374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위기) 031-874-3117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위기) 031-364-8117
		강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3-652-9840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3-252-1375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043-857-1375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통합) 041-567-7117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063-246-1375
		전남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61-285-1375
		경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 054-278-1375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55-754-1375 경남해바라기센터(응급) 055-244-8117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통합) 064-748-5117 제주해바라기센터(응급) 064-749-5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여성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여성긴급 상담전화	· 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지원	1366

디지털 성폭력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3

사안처리 관련 서식

3

사안처리 관련 서식

본 매뉴얼에 제시된 양식은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제정 2017. 9. 1. 지침 제68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교육부, 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서울시 교육청(2015)의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2018)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였음.

1. 상담 단계

- 1-1 상담일지

2. 신고 및 접수단계

- 2-1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 2-2 신고 접수 대장

3. 초기대응 단계

- 3-1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3-2 연계 의뢰서

4. 조사 단계

- 4-1 조사 출석 통지서
- 4-2 조사 서약서(피신고인)
- 4-3 비밀유지 서약서(조사 위원용)
- 4-4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 4-5 서면 진술서
- 4-6 조사 문답서(피신고인)
- 4-7 자료 제출 확인서
- 4-8 조사 결과 보고서
- 4-9 조사 결과 통보서

5. 심의 단계

- 5-1 성고충심의위원 위촉(임명)장
- 5-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위원용)
- 5-3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당사자용)
- 5-4 성고충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 5-5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
- 5-6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 5-7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 5-8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 5-9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 5-10 심의결과 통보서

6. 사후처리단계

- 6-1 재발방지 대책

상담일지

상담일	20	사례번호			
내담자		회차	회	상담자	
상담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				
상담내용					
<p>* 피해자 주 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p> <p>* 요청 사항 등</p>					
<p>* 내담자가 학부모 외 제3자, 대리인일 경우 관계 제시</p>					
차기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가해자)	성명(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위 신청인은 OO 사건의 신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신고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사실 통보		작성자 (서명)	확인 (책임교사)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학부모		
2020-1							
2020-2							
2020-3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사안 번호:				
대상학생	학년/반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조치 일자	년 월 일			
긴급조치의 필요성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일시: , 방법:)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학생 및 학부모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작성자: (인) 확인자: 학교장 (인)				

[참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16조1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법률 17조4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연계 의뢰서

작성일: 20 . 0. 00. (요일)				
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 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수정보	일자	20 . . . ()	경로	전화/게시판/내방 등
피해자 정보	이름(성별)	()	나이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가해자 정보	이름(성별)	()	나이	
	소속		직위	
피해내용 (복수선택)	<input type="checkbox"/> 강간/유사강간/준강간 <input type="checkbox"/> 성추행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input type="checkbox"/> 성차별 <input type="checkbox"/> 문자/영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내용	(기본정보) (주요 피해) (사건 직후 조치) (피해자 현재 상황) (피해자 요구사항) (상담원 조치사항) (향후 진행방향)			
의뢰 요청사항				
비고				

조사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관련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p>1. 본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p> <p>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출석일시: 년 월 일 시</p> <p>나. 출석장소:</p> <p>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p> <p>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OOOO 성고충조사위원장 (인)</p>				
문의할 곳	Tel.		E-mail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면 진술서

관련자	소속학교	학년 반(소속부서)	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OO조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성고충 사안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성명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서명 또는 인)</div>				
OO학교 OO조사위원회 귀중				

조사 문답서(피신고인)

일시:

장소:

1) 이름, 소속

<답>

2) 피신고인은 0000년 0월 0일 (장소) 00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00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이때 사건내용을 자세히 먼저 묻기보다는, 간략하게 말하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그 때 00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간, 문답서 열람 시간

피신고인: (서명)

확인자(조사위원): (서명)

자료 제출 확인서

[성 명]

[소 속]

[연락 처]

본인은 <0000-00-00-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2000년 0월 0일
구두(이메일/공문)로 통보 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형태: 00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 방문(이메일) 제출

접수자:

제출목록: 피신고인의 이메일 수신·발신 자료 1부, 참고인 진술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성명

(서명)

조사 결과 보고서

1	접수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3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4	긴급조치여부	피해자		
		행위자		
5	사안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6	현재상황	피해측		
		가해측		
7	사안진행 및 조치사항			
8	조사자 의견			

조사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00호(2020. 00. 00.)	담당자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자		조사기간	
신고내용	<p>1. 신고인은 2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어깨를 2회 만지며 “~~”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함</p> <p>2. 신고인은 2000년 00월 00일 00시경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고 발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주장함</p>		
조사 결과	<p>1. 신고내용 1에 대해 ~~의 사실이 피신고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됨</p> <p>2. 신고내용 2에 대해 ~~의 사실이 신고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됨</p> <p>3. 신고내용 3에 대해 ~~의 사실이 참고인 000의 진술을 통해 확인됨</p>		
향후계획	<p>1.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등 심의·의결(00월 00일 예정)</p> <p>2. 필요 시 가해자 징계 등 인사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p>		
<p>본인은 제00호 성희롱·성폭력 신고 건의 신고인(피신고인)으로서 고충 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향후 진행 계획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 신청인 (인)</p>			

성고충심의위원 위촉(임명)장

성명:

소속:

주소:

위촉(임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OO에대한 법률 제O조의 규정에 의하여 OO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OO 학교장 (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위원용)

본 위원회는 00법률 제00조에 의거하여 제00회 00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개요(사안 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00기구(전화: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00학교로 심의위원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당사자용)

OOOOO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OOOOO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제OO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 개요(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년 월 일

OO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성명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 교사위원()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OO 법률」 제OO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OO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OO 학교장 귀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

*사안 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자							
관련자							
성고충심의 위원회 예정일시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예정일시	신청이유			
「00법률」 시행령 제00조 제0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서명 또는 인)				
00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사안 번호:
1. 일 사: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3. 참석자: 위원장 00 위 원 000 위 원 000 위 원 000 위 원 000 위 원 000 위 원 000 간 사 000 교 사 000 학 생 000 학부모 000 학 생 000 학부모 000
4. 회 순 1) 개회 2) 심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6)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피해자 보호조치/재발방지대책 수립 7) 폐회
5. 상정 안건 - 000 의 사안 - 사안개요
6. 회의 내용(발언 요지) 000 학생 000 학부모 000 위원 000 위원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OOO	“~” 발언에 대한 성희롱 성립 여부	만장일치
구분	결정사항	표결내용
피해자 보호 조치	심리상담 연계	
재발방지대책	전수조사(실태조사) 실시	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및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한 내용 포함
	상담창구 접근성 강화	
작성자: (인)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사)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OO교육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거 OO고등학교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학년도 제O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OO교육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11조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OO고등학교 성고충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A학교 사안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1p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000을 위원장으로 총 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 2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여부판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계획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고충사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가 있는 교사 3인의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건입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	<p>(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p> <p>(위원장)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심의에서 제척되며,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p> <p>▶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할 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회피 시 위원 정족 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회피,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주의사항 전달	<p>(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p> <p>첫째,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p> <p>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p> <p>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성희롱·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띠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p> <p>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 및 신고자와 참고인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 사안 보고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고충처리기구 사안 보고	<p>(위원장) 다음은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사안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위원님께서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전담기구 사안조사서, 확인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결정을 위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 사안보고 ▶ 사안 번호 2000-00건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고충처리기구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00. 00. 00. 성희롱신고 사안 접수하여, ~~~ *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사안개요, 진행상황, 중점심사 사항 등)</p> <p>☞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A, 및 B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며, ☞ A 및 B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B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p> <p>☞ 기타 진단서,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외부 조사위원이 보고 할 수 있음.)</p> <p>▶ 이상입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희롱 조사 결과 보고서]를 숙지할 시간을 5분 정도 갖겠습니다.</p> <p>[5분 후]</p> <p>위원님들께서는 조사 보고서, 심사자료 등 관련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협의)</p> <p>(위원장) 주요 쟁점 사안은()으로 요약됩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관련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p>	<p>책임 교사가 간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 이에 대해 안내하고 진행</p>

3. 피해자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해 측 질의응답 및 관련자과의 관계(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피해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피해 관련자를 입장시 켜 주세요. (위원장) 본 사안으로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피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 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 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 희롱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달기구에서 조사한 사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 려우신 내용은 대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 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피해자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혹은 보호자 진술) 이상으로 피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000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 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 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해 관련 측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4. 가해자측 사실확인·의견진술·질의응답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가해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가해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가해 측 회의장소 입장
기피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 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신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해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00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사실 확인(특히, 피해 관련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행위 관련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진술) 이상으로 가해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000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00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귀가 안내

5. 참고인 진술(필요시)

* 조치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p>(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참고인과의 질의 응답)</p> <p>(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참고인이 없는 경우]</p> <p>(간사)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000와 000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A학교 사안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1p]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p> <p>(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6.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및 긴급조치 보고: 추진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p>(위원장) 먼저 성희롱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성희롱의 정의에 따라 본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이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성희롱 해당여부를 기표하여 성희롱 해당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p> <p>000교사의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간 성희롱 여부 논의)</p> <p>[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p> <p>(위원장) 2000-01건에 000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000교사가 행한 000교사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p> <p>[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p> <p>(위원장) 2000-01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000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000교사가 행한 000교사에 대한 행위는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p>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 종료

7.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병과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 *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16조 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 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담, 치료 등 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집행해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결	<p>(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행위교사의 병과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조연,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관련자 전보조치 등이 있습니다.</p> <p>(위원장) 다음은 피해자 000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간 상호 논의)</p> <p>(위원장) 000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00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 조치(가급적 기간 명시)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재발방지대책 의결, 기본적인 판단요소 심의 및 병과조치 여부 심의	<p>(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신청, 2차 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000의 성희롱 판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입니다.</p> <p>(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p> <p>(위원장) 다음은 가해자에게 병과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가해자 선도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교육 이후 00시간을 이수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p> <p>(위원들 간 협의)</p> <p>(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p>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20 년 제0차 000교육청

1. 사안 번호: 2020-1호

2. 관련자: A학교

- 신고인: B
- 피신고인: D
- 참고인: E

3. 결정사항

이 사안은(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등)에 (해당, 비해당)되므로 피 신고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하도록 결정한다.

위 결정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심의결과 통보서

<p>[일 시] 20 . . . (. . . 요일) 00:00</p> <p>[장 소]</p> <p>[안 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p>	
<p>회의 결과 요약</p>	
결정사항	특이사항
<p>“~” 발언에 대한 성희롱 해당</p>	<p>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지원연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p>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학교명: _____, '20.00.00.(작성일)>

□ 사건 개요

-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등) 개요
 - 가해자: 직종 및 이름(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리)
 - 피해자: 직종 및 이름(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리)
 - 참고인(있을 시): 직종 및 이름(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리)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경위 작성)

□ 사안 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 사안 처리 경과
 - (일자별로 사안 처리 경과를 작성)
 - 예) 2020.03.11. 고충처리담당자가 사안 접수
2020.03.13. 신고 후 긴급조치 및 공간 분리
- 심의위원회 결과
- 조치 사항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외부기관(검·경찰, 교육청 등) 조사 현황

□ 학교 내 주요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현황

- (예방교육 실시 현황, 상담원 지정, 상담창구 설치나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학교 내 성희롱 사안 관련 조치 현황 기재)
 - 예)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방지조치(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매뉴얼, 관련 내부 규정 첨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최근 1년 실적)
-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고충상담창구 설치

· 위원회 구성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구성 현황)

□ 학교 내 주요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현황

· (예방교육 실시 현황, 상담원 지정, 상담창구 설치나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학교 내 성희롱 사안
관련 조치 현황 기재)

예)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방지조치(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매뉴얼, 관련 내부 규정 첨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최근 1년 실적)

·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고충상담창구 설치

· 위원회 구성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구성 현황)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항목별 구분 작성, 계획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방 교육 대책(내용, 대상 등)

· 전수조사, 실태조사(항목, 결과 활용 등)

· 상담창구 홍보 등

· 사후 모니터링 대책

신고사안을 포함하여 사건 처리 이후 모니터링 방안)

담당자(소속) OO학교 담당자 OOO (전화번호)

4

관련 법률

4

관련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2.>

[제목개정 2018. 3. 2.]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에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 제1호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제13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⑤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 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 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중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제17조 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96호, 2020. 1. 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4. 5. 28.>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5. 2. 3., 2015. 12. 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4. 17.>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8. 4. 17.>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6조(성폭력 추방 기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들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들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들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들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서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2. 18.,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제목개정 2012. 12. 18.]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 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2. 3.>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②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1.,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7. 12. 1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 2.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본조신설 2012. 12. 18.]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8. 3. 13.>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8. 3. 13.>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2. 3., 2015. 12. 1., 2016. 3. 2., 2018. 3. 13.>

1. 제10조 제4항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칙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30.>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 12. 18.]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2. 12. 18., 2018. 3. 13.>

1. 제10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2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2017. 3. 21.>

부칙 <법률 제16896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부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 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 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로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신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제19조(삭제) <2013. 4. 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 제3호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 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 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회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4. 5.>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 제5항, 제6항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0.>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 2. 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 제3항 제5항의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제5항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6. 12. 20.]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5조를 적용한다.

-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를 적용한다.

-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제6항, 제29조, 제30조 제4항·제5항,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개정 2016. 12. 20.>

-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④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64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 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9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제18조(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 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죄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6.>

④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 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 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3항·제5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 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3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하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 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 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 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 1. 21.>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 1. 2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육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 ⑦ 제1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 [제목개정 2018. 1. 16.]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1. 교육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0호의 공공시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 제1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 경찰청장: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 제1항 제2호의3의 국제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②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③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6.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6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 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 제3항을 위반한 자
- ⑤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1.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 ④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6조 삭제 <2012. 12. 1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020년)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000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000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000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000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000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000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00부서(00노조, 00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한다.

② 000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000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000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000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00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000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00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000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000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000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000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고충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000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000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000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 000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000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000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000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000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처 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자인·제작 (주)인디엔피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